

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0. 12. 8. (수)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채근]

【 목 차 】

1.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 면
2.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면
3. 거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21 면
4. 거창 친환경 기능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26 면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0. 11. 16.
- 제출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0. 11. 17.

2. 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3조).
- 객관성·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다.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 체결하여야 하는 협약과 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협약에는 그 목적과 기간, 업무의 범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이 포함되도록 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5. ~ 10. 30.)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 안 제1조(목적)는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한 필요 조항이며
- (2)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3) 안 제3조(사실조사 의뢰)는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며
- (4) 안 제4조(협약체결 등)는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 체결하여야 하는 협약과 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5)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 「담배사업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4.1.2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9.12.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4.1.20>

④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31, 1997.12.13, 1999.12.31, 2008.2.29>

[제목개정 2001.4.7]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3] [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 3. 3, 일부개정]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7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종전 규정 : [시행 2009.11.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 2009. 7. 1, 일부개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사실조사 후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3.3>

-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3.3>
- ⑦ 제6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3.3>
- ⑨ 제8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8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3>
- ⑩ 제9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2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 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전문개정 2009.7.1]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 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0. 11. 16.
- 제출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0. 11. 17.

2. 제정이유

-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책무(안 제3조)
-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안 제9조)
 -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후계인력육성, 여성농업인단체 육성지원

- 영농현장 환경조성,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촉진 등
- 여성농업인 교육강화(안 제10조)
-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안 제11조)
-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 귀농 여성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한부모가족법」 제4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4조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사안발생 시 추경예산으로 확보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25. ~ 2010. 11. 13.)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2010. 3. 17. 전문개정)에 의한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 3. 17. 전문개정된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 안 제1조(목적)는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하는 필요 조항이며
 - (2)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3) 안 제3조(책무)는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안 제4조(위원회)는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 여성 농업인 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5) 안 제4조(위원회)부터 안 제8조(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기능, 수당과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5) 안 제9조(여성 농업인 지원사업)는 여성 농업인을 농업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6) 안 제10조(여성 농업인 교육강화)부터 안 제12조(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까지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복지향상, 여성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열거한 것으로서 타당하며
- (7) 안 제13조(여성 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8) 안 제14조(귀농 여성 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 농업인의 정착지원)는 귀농 여성 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 농업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9)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률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120호, 2010. 3.17,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 02-500-1825~18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7>

1.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가.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財源)의 지원계획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08.2.29>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①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08.2.29>

②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영어(營漁) 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29, 타법개정]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9.11.28] [법률 제9717호, 2009. 5.27,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타법개정]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0. 8.18] [법률 제10302호, 2010. 5.1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02-2075-8716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 7. (생략) [전문개정 2007.10.17]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2-2100-1754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지방자치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72호, 2010. 4.15,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8호, 2010.11. 2, 일부개정]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13]

거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0. 11. 16.
- 제출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0. 11. 17.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우리 군의 풍수해 발생 현황 및 재난취약지역 등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는 자료 및 현황을 조사하여 사전예방차원의 저감계획수립
- 계획수립 법적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 기초현황 조사
 - 일반현황 조사: 행정, 자연, 인문, 방재현황 등
 - 과거 풍수해 발생현황 조사(1999 ~ 2008년)
 - 풍수해특성 조사(태풍): 호우특성, 강우 및 유출특성 분석
 - 현장 조사: 693개소(하천 244, 저수지 154, 사방댐 27,

급경사지 81, 읍·면 신청 187)

○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 58개소

- 하천재해: 17개소(후보지 100개소)

- 내수재해: 9개소(후보지 23개소)

- 사면재해: 28개소(후보지 59개소)

- 토사재해: 4개소(후보지 5개소)

-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과정 및 방법

⇒ 문헌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 분석 및
공학적 검토 수행

⇒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는 우선 선정하고, 재산
피해액 1억 원 이상 시 선정

○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 사업비 산정

⇒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계 및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별
사업비 산정

- 경제성분석을 통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 B/C, 재해위험도, 인명피해, 시민불편도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주체별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의 용이성을 위해 유형별 및 유지관리 주체별
시행계획 수립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 수행

⇒ 타 분야 계획수립 시 반영 및 기존 부문별 계획의
조정 역할

- 방재제도 및 일반 치수·방재분야 활용

4. 그간 추진사항

- 2009. 07.: 용역 착수
- 2010. 01.: 현장조사 완료
- 2010. 02.: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 검토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발생경향 검토
- 2010. 04.: 중간보고(부서 자체)
- 2010. 07.: 풍수해 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전 지역 저감 대책 수립
- 2010. 09.: 군의회 및 실·과·단 중간보고
- 2010. 10.: 관련기관 의견 수렴 및 추가 현장 조사(2차)
- 2010. 11.: 공청회 개최(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5. 향후 추진계획

- 2010. 12.: 경남도 협의(의견 반영)
- 2011. 0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 신청(소방방재청)

6. 검토의견

- 동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의거 시·도 및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풍수해에 노출되거나 잠재 위험요소를 도출, 이를 예방·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정,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자체의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계획안을 수립·제출한 것으로

- 동 계획안의 공간적 범위는 거창군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가하천 황강 1개소, 지방하천 거창 위천 등 42개소, 소하천 201개소, 사방댐 27개소, 급경사지 81개소, 읍·면 조사 187개소 등 693개소를 포함하며, 대상재해의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 동 계획안 수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행정, 인문, 자연, 방재현황과 같은 기초현황 조사
 -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순으로 수립되어 있음.

- 동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연 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합당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부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1) 관내 하천 및 위험요소를 대상으로 693개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87개소의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 선정된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정성적, 정략적 분석을 통하여 최종 58개소의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였는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 10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수립 이후 추가 선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과
 - 2) 위험지구 후보지 187개소 중에서 풍수해 발생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위험지구 선정기준인 인명 및 재산피해
미미로 제외된 지구 또한 정비사업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3) 11월 19일 실시한 공청회 시 교수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영 여부.

○ 이상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법적 제도상
의 문제로 예산확보 방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내의 위험요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
립한 것으로 판단됨.

<의안번호 제2010 - 78호>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0년 12월 3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0년 12월 6일

II.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공장현황

- 위치 :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번지
- 규모
 - 부지 : 460m²(무상임대 : 화강석재 강신곤)
⇒ 부지임대 : 2007. 7. 1 ~ 2016. 6. 30(9년간 계약체결)
 - 건물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 1층 / 392m²
- 준공 : 2007. 12. 28
- 주요시설 : 건물 / 광축매 코팅석 생산설비 등 ---붙임1참조
- 용도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 생산
- 소요예산 : 451백만원(기계설비 309, 건축물 138, 부대시설 등 4)
- 사용료 면제 동의 : 2008.3.5(거창군의회 본회의)

□ 사용·수익허가 계획

○ 방침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원활한 관리·운영
- (주)거창석재조합과 상호 협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 추진

○ 신청개요

- 사업내용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수익허가
 - 허가목적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의 원활한 생산 및 마케팅
 - 허가권자 : 거창군청 경제과장(행정재산 재산관리관)
 - 허가대상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이사장
 - 허가물건 : 건물 / 기계설비 --- 『붙임 1』 참조
 - 허가기간 :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 사업추진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와 수의계약

○ 추진계획

- 사용·수익허가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신청 ⇒ 처리
 - 조건부 허가 : 재산보존 책임 / 원상태로 반환 등
- 손해보험증서 징구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거창의 대표적 향토산업인 화강석을 특화·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개발한 “친환경 기능석재”의 시험생산과 양산체제를 구축하여 각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 기능석재를 한곳에서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비영리 법인인 (재)거창화강석연구 센터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여 경쟁력을 확보코자 함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 근 거 내 용 〉

-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수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 시행령 제17조 제4항 :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 해당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사용료 부과시 문제점 및 대책

○ 사용료 산출내역

- 금 액 : 430,247,140원(재산가액)× 50/1,000(요율) = 21,512,357원
- 감 경 : 21,512,357원-(21,512,357원×30/100) = 15,058,650원
- 재산가액 : 건축물 120,692,740원, 기계설비 309,554,400원

○ 문 제 점

-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은 실험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임
 - 생산제품에 대한 특허와 신제품 인정을 통한 생산제품의 안정화 실험 공장
- 시험생산 공장으로서 수수료 수입이 적음
- 관련규정대로 사용료 부과 시 원활한 가동 애로
 - 사용료 관련 예산 미확보 / 운영비 추가 지원 요청 예상

○ 대 책

- 사용·수익허가대상인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도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 어려운 석재산업의 실물경기 부양과 제품의 안정화를 위한 시험공장으로서
 -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갖추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사용료를 면제하고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다이어트화와 자체 수익사업으로 자립화를 통해 출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임
- (사용료 부과 효과 대체)
- ⇒ 군의회 동의시 사용료를 면제하고
 - ⇒ 매년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여건에 맞게 조정 부과

IV. 참고사항

□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 합 의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VII.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거창화강석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면제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갱신 동의안으로서,

(당초 군의회 동의 : 2008. 3. 5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2008.3.13~2010.12.31)

- 먼저 관련법을 살펴보면,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0조 및 제28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요건과 대부료 요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당해 시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화강석의 가공생산은 거창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물생산으로 보아 지고 이를 가공 생산하는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을 운영하는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공유재산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 사용·수익허가 재산목록

○ 건 물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 392m²

세부시설명 면적(m ²)	공 장	사무실	기계실 및 암석물성 시험실	화장실
392	302	26.4	56.1	7.5

○ 기계설비

설비명	용도	규격	수량	비고	
주 설 비	거치대	석재 투입장치	1,120mm×2,000mm× 800mm	1대	
	세척대 (Water shower)	석재에 묻어있는 이물질 을 고압의 물로 세척 하는 장치	1,120mm×2,000mm× 2,000mm	1대	
	공기분사대 (Air blowing)	세척이 끝난 석재 표면의 물을 고압의 공기로 제거하는 장치	1,120mm×2,000mm× 2,000mm	1대	
	건조대 (Dryer)	석재에 열을 가하여 석재표면을 가열하는 장치	1,120mm×2,000mm× 2,000mm	1대	
	광촉매코팅기 (Photo-catalyst coater)	석재에 광촉매 용액을 코팅하는 장치	1,120mm×2,000mm× 2,000mm	1대	
	열처리대 (Heat treatment)	코팅이 끝난 석재에 열을 가하여 광촉매 코팅층의 경도를 증진 시키는 장치	1,120mm×2,000mm× 2,000mm	1대	
	적재대	코팅된 석재를 반출하는 장치	1,120mm×2,000mm× 800mm	1대	
정 수 설 비	고압펌프	세척에 사용되는 고압의 세척수를 공급하는 장치	380V,1.2Kw S.P : 7kgf/cm ² C : 24,400kg/h	1대	
	정수설비	고압펌프를 통하여 제공 되는 세척수의 이물질 을 제거하는 장치	마이크로필터:<25μm 압력조정기:7kgf/cm ²	1대	

설비명		용도	규격	수량	비고
공압설비	공기압축기 (Screw compressor)	주설비에 사용되는 고압의 공기를 제조하는 장치	AC 380V,22Kw FAD : 3.13m ³ /min W.P : 9.0kgf/cm ²	1대	
	냉동식 건조기	공기압축시 발생하는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F.C : 3.85Nm ³ /min W.P : 9.0kgf/cm ²	1대	
	흡착식 건조기	고압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F.C : 3.65Nm ³ /min D.P : -25,μm 이하	1대	
	에어탱크 (Air tank)	압축된 공기를 저장하는 장치	M.P : 9.9kgf/cm ² G W.P : 9.0kgf/cm ² G	1대	
집진및탈취설비	집진기	공정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	820mm×820mm×1,780mm	1대	
	광반응식 스크러버 (탈취설비)	광촉매 코팅용액 성분중 알콜성분을 분해하는 장치	1,700mm×400mm×1,400mm	1대	
위생시설	변기		양변기 소변기	2개소 1개소	
	세면대		세면대	1개소	
	정화조		1m ³ /1일	1식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